

[별지 제1호의4서식] <개정 2010.3.19>

혈액원개설허가증 재교부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5일
혈액원	허가번호		허가일	
	명칭			
	소재지			
	대표자	(성명) (생년월일)		
재교부사유				
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개설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_____ (서명 또는 인) 보건복지부장관 귀하				
※ 구비서류 혈액원개설허가증(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)				수수료
				없음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